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단5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20나305001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0. 5 선고 2021재가단11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단5145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단5145 판결

전문

원고A

피고1. B

2. C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 선고 2020. 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3. 22. 접수 제17039, 17040, 17041, 1704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E는 2016. 3.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D, 자녀인 원고·피고들·F·G이 있다.

나. 관련 결정

1) 울산지방법원은 2017. 7. 12. 상속재산분할 등 심판 사건(2016느합11)에서, ① E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일부 예금채권·연금보험 채권에 관하여 분할을 명하였고, ② D로 하여금 F에게 130,756,416원, 원고·피고 B·G에게 각 135,756,416원, 피고 C에게 129,256,416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2) D 및 G은 위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2017. 12. 27. 모두 기각됨에 따라(부산고등법원 2017브5011), 2018. 1. 20.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등기 경위

- 1) D는 2018. 3. 22. 위 결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D는 2018. 3. 22.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제1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7040호
별지 목록 제2항	제17039호	
별지 목록 제3항	제17041호	
별지 목록 제4항	제17042호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4호증, 을 제1~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원고가 위 결정에 따라 D에 대하여 135,756,416원의 채권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가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는 물론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1) 원고가 어떠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2)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들 명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 추정력을 뒤집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판사최누림

별지

1)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등 참조

2)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